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 혁신금융 • 포용금융 • 신뢰금융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20.3.3.(화)
책 임 자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손 영 채(02-2100-0001)	담 당 자	허 성 사무관 (02-2100-2655)	

제 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시스템리스크가 감소합니다.

■ '20.3.3(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 3월 내 국회제출 예정

-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1 | 추진 배경

□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도입된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의 근거를 자본시장법에 규정하는 개정안입니다.

*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19.1월) → 시행 예정('20.10월)
 ** 금감원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통해 기 시행('17.3월)

○ 동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19.12.4일), 법제처 심사('20.2.17일), 차관 회의 의결('20.2.28일)을 거쳐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3월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거래정보저장소 제도

①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 보고의무

- 금융투자업자 등*에게 자기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하고,

* 하위규정에서 금융투자업자 외의 금융기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 일정거래규모 이상의 일반법인 등에게도 보고의무를 부여할 예정

- 보고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1억원 이하)를 부과하겠습니다.

② 거래정보저장업의 인가 등

- 거래정보저장업을 인가제로 도입하여 인가를 받지 않은 자의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과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 금융투자업자 및 다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동일하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적용

③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감독 등

-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금감원은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하고, 금융위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인가취소·업무정지·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④ 거래정보의 제공 등

-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금융위·금감원·한은 등 금융당국에 제공하고, 거래정보와 관련된 통계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2.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 교환의무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하고,

* 해외사례(미국, EU, 홍콩, 싱가포르 등)와 같이 수신기능이 없어 영업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여전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하는 여전사는 제외

- 증거금 교환의무 위반 시에는 과징금(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기대효과 및 감독 효율화 방안

- '거래정보저장소'(20.10월 시행 예정)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를 통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시스템리스크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① (거래정보저장소) 금융당국이 거래당사자 및 계약조건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 개별 금융기관의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저를 거래상대방 및 기초자산별로 분석하고 위험집중도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위기대응 능력이 향상됩니다.
-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TRS 등 장외파생계약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②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대규모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담보자산 확보)하게 함으로써,

-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비용이 증가됨으로 인해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적은 CCP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로의 이전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CCP는 매매당사자 쌍방의 채무채권을 인수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직접부담(채무자에게는 채권자가 됨) → 매매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CCP에서 채무를 이행

< 금융 용어 설명 >

- 거래정보저장소 :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래정보 등록기관
- 비청산장외파생상품 :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
- 총수익교환(TRS) :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일정한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장외파생상품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	-------------------------------------------------------------------------------------------	--------------------------------------------------------------------------------------------------	-------------------------------	---------------------------------------------------------------------------------------------------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 고 장외파생상품 제도개선 추진현황

□ 우리나라는 G20 회원국으로서 국제합의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음

① (중앙청산소)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거쳐 특정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의무청산을 시행('14.6월)

② (높은 수준의 자본요건)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바젤Ⅲ자본비율 산출시 非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14.6월)

③ (증거금) 금감원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통해 非청산 장외파생거래에 증거금 부과제도를 시행('17.3월)

④ (거래정보저장소*) 금융투자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거래정보저장소 도입 근거를 마련('19.1월)

* 장외파생상품 관련 계약 정보를 수집, 보관, 공시하고 금융 당국에 보고

⑤ (전자거래플랫폼) 전자거래플랫폼 도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시장현황과 국제동향을 모니터링

* G20 합의내용 : '적절한 경우(when appropriate) 전자거래플랫폼(ETP) 도입

< 장외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 도입현황 >

제도개선 내용	도입방법	도입시기
중앙청산소(CCP) 도입	자본시장법	'14.6월
높은 수준의 자본요건 적용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14.6월
증거금(Margin Requirement) 부과	가이드라인	'17.3월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금투업규정	'19.1월
전자거래플랫폼(ETP) 도입	도입방안 검토('17.10월 연구용역 완료)	미정